

|                                                                                   |                                                                            |                                              |
|-----------------------------------------------------------------------------------|----------------------------------------------------------------------------|----------------------------------------------|
| 문 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br>국제협력과                                                         | 과 장 박용주 042-481-5063<br>서기관 이진용 042-481-8659 |
|  | 2017년 11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r>인터넷매체는 11월 19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                                              |

## 한·중 특허청장 회담, 양국 경제협력 재점화 이끌어

- 한·중 특허청, 올해 양국 중앙정부 부처 간 최초로 양해각서 체결 -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국의 셴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업국장과 지난 17일(금) 중국 항저우에서 청장회담을 갖고, 특허, 디자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성고가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sup>1)</su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CS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양해각서는 올해 양국 중앙정부 부처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것이다.

\* 2017.11. 현재, 전 세계에서 한·미, 미·일 간 2개의 CSP가 운영 중

1) 특허 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양국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

또한, 양국 특허청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이것은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원된 디자인 건수: 2,135건 (2016년)

아울러 양국 특허청은 중국이 추진 중인 디자인 심사역량 강화,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등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디자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특허청은 CSP, 디자인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등 중국이 새롭게 시도하는 대외협력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중국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내외부적 요인으로 지체되던 논의가 최근의 우호적 한·중 관계 속에서 진전을 보이며, 지재권 분야의 한·중 협력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재권 최대 출원 국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 조치 등은 중국 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적지 않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재권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협력 증진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 논의와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 모두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별도 첨부

사진1.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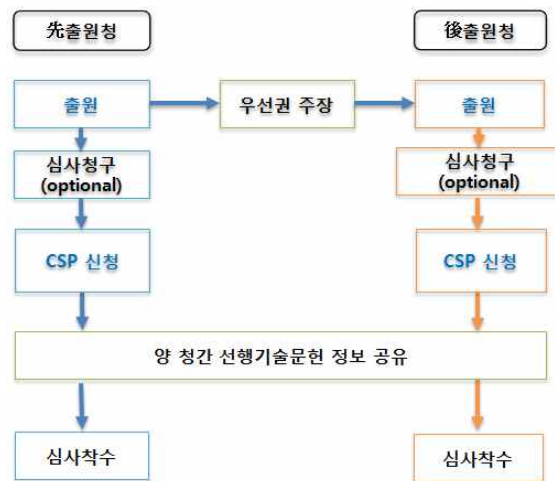


사진3.



## □ 특허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개념

-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양국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



\* 표에서 '심사착수'는 '최초 심사결과 통지' 의미

## □ 기대효과

- ① 선행기술 정보 공유로 강한 특허 창출
- ② 빠르게 심사해 주어 조기 특허 취득 가능
- ③ 선행기술문헌 검색시간 단축으로 업무경감
- ④ 빠르게 심사해 줘도 양국 우선심사 신청료 무료

## □ 추진 경과

- (2014.10.) 제6차 IP5 WG3 회의에서, 한국이 수정 제안
- (2014.11.) 韓·美 워크쉐어링 실무회의에서, 양국 간 시행 합의
- (2015.5.) 韓·美 청장회담에서, 韓·美 CSP 시행 MOU 체결
- (2015.9.~) 韓·美 CSP 시행, (15.8.~) 美·日 CSP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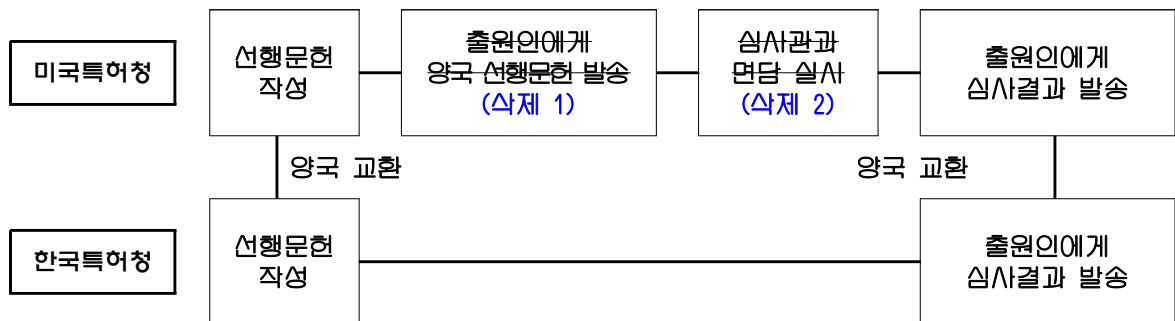
## □ 그 간의 경과 및 향후 일정

- [2015.9.~2017.8.(2년)] 1차 시범사업 시행\*  
\* 총 112건 신청: 국내 77건, 외국기업 35건
- [2017.10.] 2차 시범사업 시행 MOU 체결
- [2017.11.~2020.10.(3년)] 2차 시범사업 시행

## □ 2차 시범사업 절차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소화(삭제 1, 2)를 통해 미국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문제 및 불필요한 면담절차 해소

\* 출원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출원인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위반시 특허권 행사 제한



- (신청 요건) 청구항 대응범위 감축(신청요건⑤) 등 출원인 신청편의 제고

| 1차 시범사업                                                                                                                                                                                                                                                                         | 2차 시범사업                                                                                     |
|---------------------------------------------------------------------------------------------------------------------------------------------------------------------------------------------------------------------------------------------------------------------------------|---------------------------------------------------------------------------------------------|
|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br>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br>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br>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br>⑤ <b>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b><br>⑥ 최우선일이 20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br>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 (독립항은 3개 이하)<br>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br>⑨ <b>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b><br>⑩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① ~ ④  유지/<br>⑤ <b>수정</b><br><b>(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b><br>⑥ ~ ⑧  유지/<br>⑨ ~ ⑩ <b>삭제</b> |





#### □ 우리 청이 최초 출원청인 경우 (OFF/KIPO)

- (접근코드\* 발급) 출원인 신청 → 우리청에서 접근코드 발급 및 WIPO DAS에 발급된 접근코드 등록

\* 접근코드(Access Code): 16진법 4자릿수,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

- (우선권서류 요청 수신) DAS를 통해 후속 출원청의 우선권 증명서류 요청을 수신
- (우선권서류 응답 전송) 요청 우선권서류\*를 DAS를 통해 수신

\* XML 메시지와 PDF 파일 형태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송

#### □ 우리 청이 후속 출원청인 경우 (OSF/KIPO)

- (접근코드 기재) 출원서 작성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WIPO DAS 접근코드 기재
- (우선권서류 요청 전송) DAS를 통해 최초 출원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요청
- (우선권서류 응답 수신) 요청 우선권서류\*를 DAS를 통해 수신

\* XML 메시지와 PDF 파일 형태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송